

CONTACT



변호사 고환경

T: 02.2191.3057
E: hwankyung.ko@leeko.com



변호사 이정명

T: 02.6386.0730
E: chloe.lee@leeko.com



변호사 차현정

T: 02.772.5971
E: hyunjeong.cha@leeko.com



변호사 김영정

T: 02.6386.6364
E: youngjung.kim@leeko.com



전문위원 김시홍

T: 02.6386.0756
E: sihong.kim@leeko.com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 발표

2024년 9월 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 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의 후속 내용으로, 지난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내용은 본 뉴스레터에 첨부된 저희 법무법인의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PG사의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

금융위원회는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판매자 보호를 위해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방법으로 제한하고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예를 들어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와 같은 적절한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산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고 PG사의 파산시에도 이용자·판매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2.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현재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감독수단이 없는 상황이나 앞으로는 경영지도기준 또는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미이행 시 영업정지, 미이행 시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근거를 마련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여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제재·처벌방도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3. PG업 범위 명확화

한편, 금융위원회는 PG업의 본질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인데 현행법상 PG업 정의는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처럼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까지 PG에 포함할 경우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 화물차 지입업자, 인력공급업자, 건설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키오스크)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금정산이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까지 금융규제가 강제될 경우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유의하실 사항

금융위원회는 위 제도개선안을 토대로 9월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개정안 및 국회에서의 논의를 계속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필요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키고, 규율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할 것이라고 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이도 함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법 및 개정 시행령에 관한 다수의 프로젝트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제도개선 방향 발표 뉴스레터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